

증권종합대출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이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27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기초한 대출에 관하여 회사와 대출거래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별첨></p> <p>1.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대출금액 최고한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1인당 대출금액의 최고한도는 20억원까지이며, 매도담보대출의 한도는 매도 결제전 매도체결 금액의 98% 이내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 주식,선물,옵션,이용안내 > 신용,대출,대여안내 > 예탁증권담보대출안내) 및 증권종합대출 거래설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 <p>7. 제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증거금율 20%, 30% 종목은 140%, 증거금율 40% 종목은 150%, 증거금율 50%종목은 160%,</p> </div>	<p>제 27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별첨></p> <p>1.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대출금액 최고한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1인당 대출금액의 최고한도는 40억원까지이며, 매도담보대출의 한도는 매도 결제전 매도체결 금액의 98% 이내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 주식,선물,옵션,이용안내 > 신용,대출,대여안내 > 예탁증권담보대출안내) 및 증권종합대출 거래설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 <p>7. 제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p>	<p>금소법 개정 반영 관할법원 조항 변경</p> <p>기본한도 증액</p>

60%종목은 170%로 적용합니다.
 해외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등급 S종목은 150%, 등급 A종목은 160%, 등급 B종목은 170%로 적용합니다.
 수익증권담보대출, 상장채권담보대출, ELS/DLS/ELB/DLB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적용합니다.

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적용합니다.
 해외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등급 S종목은 150%, 등급 A종목은 160%, 등급 B종목은 170%로 적용합니다.
 수익증권담보대출, 상장채권담보대출, ELS/DLS/ELB/DLB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적용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단일화

9. 제16조제1항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중략)
 2. 담보부족상환 시 산정방법
 (중략)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종목 신용융자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A종목 대응증권 5,000,000원(500주),
 담보유지비율 150%, 계좌담보비율 150%, 대출단가 10,000원

일자	주식가격	총평가금액	대출금액	필요담보금액	담보부족금액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0원	
D일 장마감	9,500원	14,25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750,000원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장마감	9,000원	13,5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1,500,000원	추가담보 미납 (150만원)

9. 제16조제1항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중략)
 2. 담보부족상환 시 산정방법
 (중략)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종목 신용융자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A종목 대응증권 4,000,000원(400주),**
담보유지비율 140%, 계좌담보비율 140%, 대출단가 10,000원

일자	주식가격	총평가금액	대출금액	필요담보금액	담보부족금액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4,000,000원	10,000,000원	14,000,000원	0원	
D일 장마감	9,500원	13,300,000원	10,000,000원	14,000,000원	700,000원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장마감	9,000원	12,600,000원	10,000,000원	14,000,000원	1,400,000원	추가담보 미납 (140만원)

담보부족 및 반대매매 산정 사례 변경(변경 유지비율 반영)

D+2일 장개시전	08:20분경 담보부족에 대한 반대매매주문 처리
--------------	----------------------------

☞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락하여 담보부족 1,500,000원 발생

(임의상환일 기준가 9,000원의 85%인 7,6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구분	반대매매수량	처분금액	대출상환금액	예수금
금액상환	607주	4,643,550원	4,643,550원	0원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종략)

※ (참고)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부족해소 수량은 1,000주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담보해소면 아래중간수량, 담보부족이면 위로 중간수량을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1,000주(담보해소) → 999주(담보해소) → 500주(담보부족) → 750주(담보해소) → 625주(담보해소) → 562주(담보부족) → 593주(담보부족) → 609주(담보해소) → 601주(담보부족) → 605주(담보부족) → 607주(담보해소) → 606주 (담보부족)이므로 607주로 최종반대매매수량 산정

※ 607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607주 x 7,650원) = 5,356,450원

총 평가금액 (1,500주-607주) x 9,000원 = 8,037,000원

필요담보금액 = 5,356,450원 x 150% = 8,034,675원

총평가금액(8,037,000원) > 필요담보금액(8,034,675원) 담보해소

※ 606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606주 x 7,650원) = 5,364,100원

총 평가금액 (1,500주-606주) x 9,000원 = 8,046,000원

필요담보금액 = 5,364,100원 x 150% = 8,046,150원

총 평가금액 (8,046,000원) < 필요담보금액(8,046,150원) 담보부족

D+2일 장개시전	08:20분경 담보부족에 대한 반대매매주문 처리
--------------	----------------------------

☞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락하여 담보부족 1,400,000원 발생

(임의상환일 기준가 9,000원의 85%인 7,6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구분	반대매매수량	처분금액	대출상환금액	예수금
금액상환	819주	6,265,350원	6,265,350원	0원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종략)

※ (참고)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부족해소 수량은 1,000주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담보해소면 아래중간수량, 담보부족이면 위로 중간수량을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1,000주(담보해소) → 999주(담보해소) → 500주(담보부족) → 750주(담보부족) → 875주(담보해소) → 812주(담보부족) → 843주(담보해소) → 827주(담보해소) → 819주(담보해소) → 815주(담보부족) → 817주(담보부족) → 818주 (담보부족)이므로 819주로 최종반대매매수량 산정

※ 819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819주 x 7,650원) = 3,734,650원

총 평가금액 (1,400주-819주) x 9,000원 = 5,229,000원

필요담보금액 = 3,734,650원 x 140% = 5,228,510원

총평가금액(5,229,000원) > 필요담보금액(5,228,510원) 담보해소

※ 818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818주 x 7,650원) = 3,742,300원

총 평가금액 (1,400주-818주) x 9,000원 = 5,238,000원

필요담보금액 = 3,742,300원 x 140% = 5,239,220원

총 평가금액 (5,238,000원) < 필요담보금액(5,239,220원) 담보부족